

● ● ● ● ● ● ● ●

협정 이행 HS와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의
개정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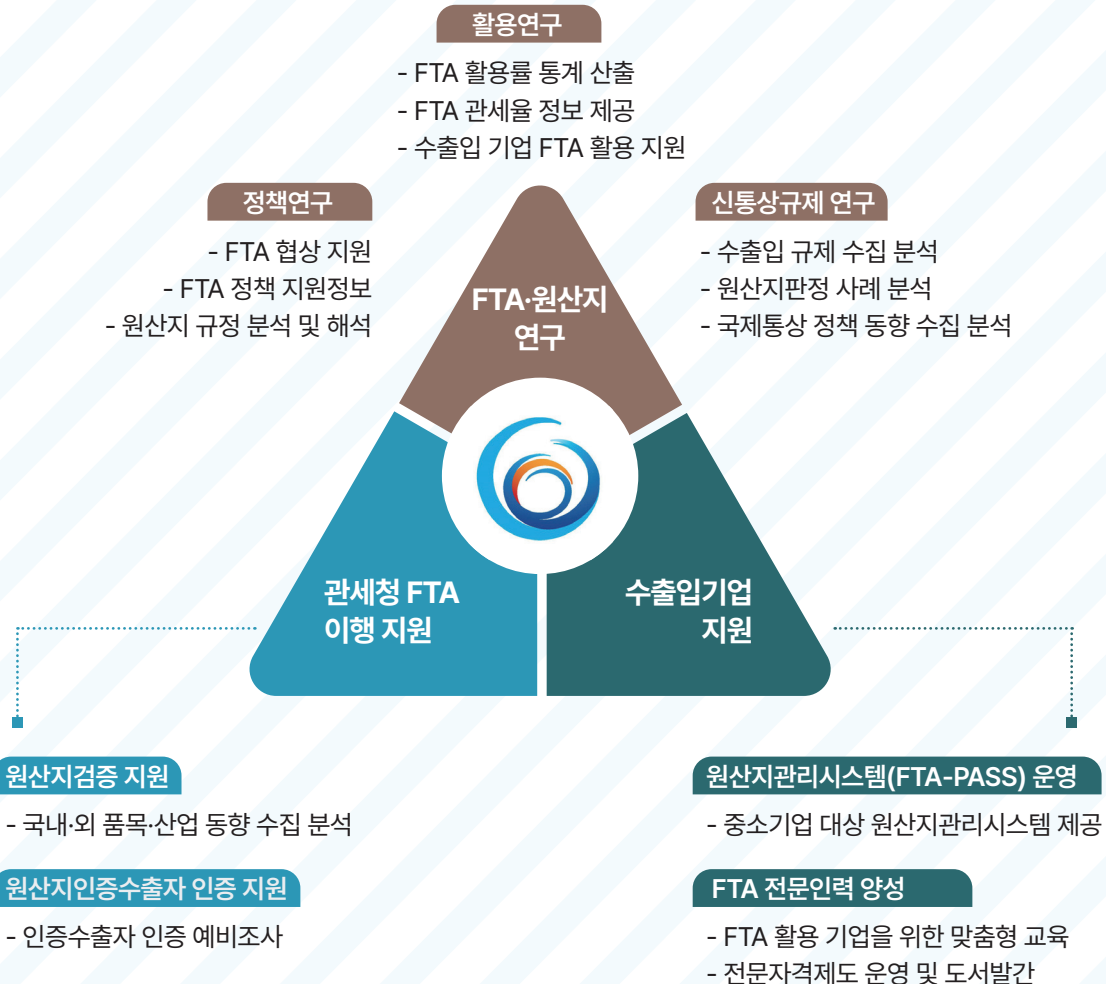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 사진 출처 : Freepik

관세청,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이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하였다.
- ☑ 미국은 2025년 3월 26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대상 25% 관세 부과 대상의 품목번호* (147개)를 발표하였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당 품목을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 자동차 17개-자동차 부품 130개의 품목번호를 발표하였으며, 수입 자동차는 4/3 발효, 자동차 부품은 5/3 발효된다.
- ☑ 품목번호는 7단위 이하의 경우 각국이 달리 운영하고 있어, 동일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 해당 연계표는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목록을 총280개의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우리 수출 제품이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해당 자료는 (1) FTA 포털 ▶ 공지사항 또는 (2) 한국원산지정보원 ▶ 발간자료 ▶ 신통상 정보 ▶ 동향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정 이행 HS와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의 개정 필요성



[글_윤호성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장]

FTA 실무에 있어 현행 HS와 협정 이행시(C/O 기재) 적용되는 HS 버전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기업은 현행 및 협정 이행 HS 두 체계를 모두 숙지하고, 이를 정확하게 적용하여 무역실무서류 작성,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HS 불일치는 협정 활용 및 이행의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유발하므로, 협정의 HS 및 품목별원산지기준(PSR)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살펴보겠다.

1. 들어가며



품목별원산지기준(PSR)¹⁾은 협정의 이행과 활용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이는 기업의 원산지판정 및 당사국의 원산지확인(C/O발급, 원산지조사 등)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우리측 기발효 22개 협정 중 현행 HS를 기준(HS 2022)으로 PSR이 설정된 협정은 RCEP이 유일하며, 그 이외 21개 협정은 HS 2007·2012·2017 등 과거 HS 기준으로 설정된 PSR을 이행하고(원산지 판정 및 확인, C/O 발급 등) 있다.

협정 이행이 장기화되었음에도 여전히 과거 HS 버전으로 설정된 PSR을 이행하는 이유는, 동 기준(HS와 PSR)은 협정당사국 간 협상 및 합의에 의해 개정되나, 상대국이 우리측 개정 요구를 공감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 또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개정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행화되지 않은 HS와 품목별원산지기준(PSR) 이행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고, 상품의 신 기술·제품 등장 및 일반적인 산업 요구사항²⁾을 반영하지 못하여 원산지지위 획득의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현행 및 협정 이행 HS 불일치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협정 HS와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품목별원산지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s)

2) 한-아세안 FTA는 재단, 봉제가 발생할 수 없는 양말, 장갑 등에 대하여 원산지 충족 요건으로 재단 봉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2. HS 협약의 정기 개정 개요



HS 코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에 따라 개정되며, 이는 협약의 부속서인 품목분류표(Nomenclature)의 변경을 의미한다.³⁾ HS 코드는 활용 주체인 각국 정부, 세관당국, 무역 관련 종사자 등의 요청이나 기술 발전, 국제 무역 흐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개정된다.⁴⁾

HS 코드의 개정 주기는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1988년 시행 이후 1992년과 1996년에 개정되었고, 2002년부터는 5년 주기가 정착되었다. 가장 최근 개정은 2022년 이루어진 제7차 개정이다.⁵⁾

● HS 정기 개정 주요내용

구분	개정 개요	6단위 코드의 수
1차 개정 (92.1.1)	• HS 제정 작업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 반영 및 호의 용어를 보완·개정	5,019~5,018
2차 개정 (96.1.1)	• 신상품의 개발과 국제기구에서 요청한 마약운반물질 및 오존층파괴물질 등을 중심으로 품목분류의 신설	5,018~5,113
3차 개정 (02.1.1)	• 멸종위기 및 CITES협약 대상품목 등 특정 품목(또는 소분류) 신설하여 HS의 통일성 적용을 위한 품목 보완	5,113~5,224
4차 개정 (07.1.1)	•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통계분류기준 및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반영	5,224~5,052
5차 개정 (12.1.1)	• FAO(국제 식량 농업기구) 요청을 재반영하는 한편, 신상품 및 국제무역 상 중요한 품목을 반영	5,052~5,205
6차 개정 (17.1.1)	• WSC(세계반도체협회)의 요청에 따라 집적회로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류의 학명을 다양하게 특개하는 한편, 신상품 및 국제무역 상 중요품목의 반영	5,205~5,387
7차 개정 (22.1.1)	• 바젤협약의 요청에 따라 산업폐기물(e-waste)의 특개 • 권련형 전자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제품 등장과 관련한 개정신상품 및 국제무역 상 중요 품목의 반영(LED 제품 특개, 스마트폰,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3D프린터 등의 호/소호 신설) • 제8541호 반도체의 범위 확대 • 제17부 수송기기 개정(무인기 신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소호 신설 등)	5,387~5,612

◎ 자료 출처 : 2022년 HS 개정내용 해설(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김성채) 가공

3) 4) 2022년 HS 개정내용 해설(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김성채)

5) HS 협약은 1992년, 1996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 2022년 등 총 7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3. 현행 HS / 협정 이행 HS 및 품목별원산지 기준(PSR) 불일치 현황



HS 코드는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 무역 통계의 표준화와 관세 부과 기준 통일을 위해 5년 주기로 개정되며, 현재 수출입 무역서류 및 통계 산출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HS 2022 버전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발효 FTA는 HS 2007·2012·2017 버전을 기준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현행 HS 2022 기준으로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을 설정·이행하고 있는 협정은 RCEP이 유일하다.

특히, 인도, EU, 페루, 튀르키예, 뉴질랜드, 영국과의 협정은 여전히 HS 2007 버전을 기준으로 이행되고 있어, 현행 HS와 협정 이행 HS 간의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다.⁶⁾

● 우리측 기발효 협정 발효 시점 및 이행 HS 현황

우리측 기협정	발효 연도	협정 HS
인도	2017	HS 2007
EU	2011	
페루	2011	
튀르키예	2013	
뉴질랜드	2015	
영국	2021	
칠레	2004	HS 2012
싱가포르	2006	
미국	2012	
호주	2013	
캐나다	2015	
중국	2015	
콜롬비아	2016	
중미	2021	
이스라엘	2022	
EFTA	2006	HS 2017
아세안	2007	
베트남	2015	
캄보디아	2022	
인도네시아	2023	
필리핀	2024	
RCEP	2022	HS 2022

6) 협정의 이행을 위한 HS 및 품목별원산지기준은 협정 당사국간 협상 및 합의에 따라 개정된다.

4. 현행 HS 및 협정 이행 HS 불일치 문제점



현행 HS 및 협정 HS 버전 불일치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역 실무 상 복잡성과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수출입신고 등 무역실무서류에는 최신 HS 2022 기준을 적용하나, 협정의 원산지증명서(C/O) 작성 및 PSR 충족 여부 판정은 각 협정 이행 HS 버전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원화된 HS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현행 HS 및 협정 HS 불일치 문제점

01

원산지 판정 및 확인의 복잡성 발생

02

무역실무서류와 원산지증명서의 HS 코드 작성 이원화

01 원산지판정 및 확인의 복잡성 발생

앞서 밝힌 것과 같이 무역실무서류는 현행 HS 버전을 기준으로 작성되지만, 협정 활용을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HS 버전의 PSR로 확인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HS 2022 기준으로 동일 세번에 분류되는 물품일지라도, 협정이 HS 2007·2012·2017 등 과거 버전을 기준으로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세번을 별도로 확인하고 해당 세번에 대한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을 따로 판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기업은 원산지 판정 및 관세당국은 원산지 확인 등에 있어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현행 HS 제9620호의 일각대·양각대·삼각대 등의 장비 지지구는 HS 2017에서 신설된 호(heading)이다. 기존에는 삼각대, 일각대, 양각대와 같은 장비 지지구를 재질 및 사용되는 완성품의 종류에 따라 제39류, 제44류, 제73류, 제76류, 제84류, 제85류, 제90류 등에 폭넓게 분류하였다. 2017년 HS 협약 제6차 개정에서는 제9620호를 신설하여 장비 지지구의 재질 및 사용되는 완성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품목으로 함께 분류하도록 하였다.⁷⁾

이에, HS 2007 및 HS 2012 버전으로 협정을 이행하고 있는 FTA에서는 현행 HS 코드 제9620.00호가 존재하지 않는 세번이며, 과거 HS 버전 기준으로(HS 2007 또는 2012) 정확한 세번(품목분류) 및 PSR을 확인하고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HS 2022 제9620.00호에 연계되는 HS 2007 버전의 세번을 추적하면 다음과 같으며, HS 2007의 16개 세번에서 분리되어 통합되었음이 확인된다.⁸⁾

7) 2017 HS 협약 주요개정 사항(관세평가분류원 김성채)

8) HS 2022 제9620.00호는 HS 2007의 제3926.90호, 제4421.90호, 제6815.10호, 제7326.90호, 제7616.99호, 제8431.39호, 제8473.30호, 제8487.90호, 제8522.90호, 제8529.90호, 제9005.90호, 제9006.91호, 제9007.91호, 제9015.90호, 제9033.00호, 제9209.99호 등 16개 세번과 연계된다.

● HS 2022 제9620.00호의 HS 2007 연계

HS 2022		HS 2007		
HS	품명	HS	한-인도 PSR (단순 연번)	한-EU PSR (단순 연번)
9620.00	일각대 · 양각대 · 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3926.90	① CTSH + RVC35	① MC50
		4421.90	① CTSH + RVC35	② CTH
		6815.10	① CTSH + RVC35	② CTH
		7326.90	② CC + RVC25	② CTH
		7616.99	③ CTH + RVC25	③ CTH all
		8431.39	① CTSH + RVC35	④ CTH or MC50
		8473.30	① CTSH + RVC35	④ CTH or MC50
		8487.90	① CTSH + RVC35	④ CTH or MC50
		8522.90	① CTSH + RVC35	⑤ CTH or MC45
		8529.90	① CTSH + RVC35	① MC50
		9005.90	① CTSH + RVC35	⑤ CTH or MC45
		9006.91	① CTSH + RVC35	⑤ CTH or MC45
		9007.91	① CTSH + RVC35	⑤ CTH or MC45
		9015.90	① CTSH + RVC35	⑤ CTH or MC45
		9033.00	① CTSH + RVC35	⑤ CTH or MC45
		9209.99	① CTSH + RVC35	⑥ MC40

◎ 자료 출처 : WCO 연계표, 관세청 HS 연계표, 협정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HS 2007 기준으로 협정을 이행하고 있는 한-인도 CEPA는 과거 16개 세번의 경우 3가지(①~③번) PSR이 설정되어 있으며, 각 품목(세번)의 해당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야 협정을 활용할 수 있다. 한-EU FTA는 과거 16개 세번의 경우 6가지(①~⑥번) PSR이 설정되어 있으며, 각 품목(세번)의 해당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처럼, 현행 HS 및 협정 이행 HS 불일치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 품목의 과거 HS를 확인하고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앞의 장비 지지구 사례에서 다양한 재질/종류의 일각대·양각대·삼각대를 생산하는 기업은 상이한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을 충족해야 하므로, HS 코드 확인 및 원산지 판정·관리의 복잡성이 현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관세당국 입장에서는 원산지확인(C/O 발급, 원산지조사 등) 과정에서 현행 HS 기준(HS 9620.00)으로는 동일한 HS 코드로 분류되는 물품이라도, 해당 물품의 HS 2007 버전 세번을 정확히 확인한 후 세번별 상이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조사)해야 하는 복잡성이 초래되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인도, EU와의 FTA에서 협정 이행 HS 및 PSR이 HS 2007에서 HS 2022로 개정된다고 가정해 보면, HS 2022 제9620.00호에 대하여 HS 2007의 각기 상이한 세번의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이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된 품목별원산지기준이 설정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원산지기준 충족 및 원산지 관리의 용이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관세당국은 원산지확인(C/O발급 및 원산지조사)의 비효율이 개선됨을 의미한다.

이에 현재 대부분의 우리측 기발효 협정에서 이행하고 있는 HS 2007·2012·2017 기준의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을 현행 HS 2022 기준으로 신속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현행 HS 2022는 HS 6단위 기준 총 5,612개로 구성된다. HS 2022를 기준으로 2007·2012·2017의 HS 코드 변화를 확인해 보면, HS 2017 총 5,387개 세번 중 HS 2022까지 변경 없이 유지된 세번 수는 5,242개로 370개 세번의 변화가⁹⁾ 발생하였다.

HS 2012 총 5,205개의 세번 중 HS 2022까지 변경 없이 유지된 세번 수는 4,993개로 619개의 세번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HS 2007 총 5,052개의 세번 중 HS 2022까지 변경 없이 유지된 세번 수는 4,683개로 929개 세번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변화된 세번은 협정 HS 및 PSR 개정 시 품목별원산지기준의 조정 및 개정이 필요한 대상이다.

HS 2007 · 2012 · 2017 버전의 HS 2022 세번 유지 현황

		
5,242개 세번 유지 (370개 품목이 신규 세번)	4,993개 세번 유지 (619개 품목이 신규 세번)	4,683개 세번 유지 (929개 품목이 신규 세번)

◎ 자료 출처 : WCO 연계표, 관세청 HS 연계표 등을 참고하여 작성

주) 위 글과 표의 수치는 HS 2022 5,612개 품목을 기준으로 단순히 HS 2007·2012·2017의 세번이 유지된 품목과 변경된 품목의 수이며, 실제 협정에서 HS 및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현행화)시 기존에 HS 버전에서 유지된 세번일지라도 HS 협약 개정 사항에 따라 품목별원산지기준이 개정되어야 하는 품목의 수는 더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HS 6단위 기준 HS 2007(총 품목수 5,052개)과 HS 2022(총 품목수 5,612개)의 연계란은 6,592개로 HS 협약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협정의 HS 및 품목별원산지기준을 개정한다.



9)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동일 품목의 단순 HS 변화 및 신규 HS 신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

02 무역실무서류와 원산지증명서의 HS 코드 작성 이원화

현행 HS 및 협정 HS 버전 불일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C/O)상 HS 코드 기재 시¹⁰⁾ 협정에서 이행하고 있는 HS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¹¹⁾

우리측 22개 기발효 협정의 C/O상 HS 코드 작성 여부 및 작성 버전은 다음과 같으며, C/O상 현행 HS 2022 세번 기재가 가능한 협정은 한-중국과 RCEP 등 2개 협정이다.

● 우리측 기발효 협정 C/O상 HS 코드 기재 여부 및 사용 버전¹²⁾

협정	C/O HS 필수 항목 여부	협정 HS 버전	C/O 작성 HS 버전
 칠레	O	2012	좌동
 싱가포르	O	2012	좌동
 EFTA	-	2017	-
 아세안	O	2017	좌동
 인도	O	2007	좌동
 EU	-	2007	좌동
 페루	O	2007	좌동
 미국	O	2012	좌동
 튀르키예	-	2007	-
 호주	O	2012	좌동
 캐나다	O	2012	좌동
 중국	O	2012	2022
 뉴질랜드	O	2007	좌동
 베트남	O	2017	좌동
 콜롬비아	O	2012	좌동
 중미	O	2012	좌동
 영국	-	2007	-
 RCEP	O	2022	좌동
 이스라엘	O	2012	좌동
 캄보디아	O	2017	좌동
 인도네시아	O	2017	좌동
 필리핀	O	2017	좌동

◎ 자료 출처 : 협정문을 참조하여 작성

예를 들어, 현행 HS 제3002.41호를 아세안으로 수출 시 한-아세안 FTA C/O(7번란)에 HS 2017의 세번을(제3002.20호) 기재하여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아세안 FTA HS 2017을 기준으로 협정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

10)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 또는 신고서상 HS 기재를 필수 기재 항목으로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11) 현행 HS 2022이나 협정에서 이행하고 있는 HS 버전의 세번을 작성하여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12) 아세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과의 협정은 C/O상 수입국의 HS코드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HS 2022 제3002.41호는 HS 2017에서 제3002.20호이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HS 버전 관련

CHECK POINT!

1) HS 2022와 HS 2017 세번 확인

- HS 2022 제3002.41호는 HS 2017에서 제3002.20호로 연계됨

HS 2022 세번 및 품명	HS 2017 세번 및 품명
3002.41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3002.20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2)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되어야 하는 HS 버전은 HS 2017

- HS 2022 제3002.41호 대신 HS 2017의 제3002.20호와 PSR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양쪽)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HS 2022 3002.41 기재 불가 #HS 2017 3002.20 기재 필요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					

반면, 한-중 FTA는 HS 2012 버전으로 협정을 이행하고 있으나, 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C/O상(9번란) HS 협약 제7차 개정예 따른 HS 2022 세번 기재가 가능하다. 다만, 10번란의 원산지기준은 HS 2012 기준 PSR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에 현행 HS 제3002.41호를 중국으로 수출 시 C/O상(9번란) HS 2022 세번인 제3002.41호를 기재할 수 있으며, 10번란에는 HS 2012 세번인 제3002.20호의 PSR이 기재 되어야 한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HS 버전 관련

CHECK POINT!

1) HS 2022와 HS 2012 세번 확인

예) HS 2022 제3002.41호는 HS 2012에서 제3002.20호로 연계됨

HS 2022 세번 및 품명		HS 2012 세번 및 품명	
3002.41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3002.20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2)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상 HS 코드는 현행 HS 2022 기재 가능, PSR은 협정문상의 기준인 HS 2012 제3002.20호의 PSR을 기재해야 함에 유의 필요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참고)

ORIGINAL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No.: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China FTA Issued in (see Overleaf Instruction)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untry: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5. Remarks:			
6. Item number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Six-digit code) (HS 2022) 3002.41 기재	10. Origin criterion (HS 2012) 3002.20 의 PSR 기재	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m ³ , etc.)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4.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China FT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기업들은 현행 HS 및 협정 이행 HS 두 체계를 모두 숙지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C/O)상 현행 HS 버전을 기재할 경우 협정상대국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이러한 현행 HS 및 협정 이행 HS 불일치 지원을 위해, 현행 및 협정 이행 HS 간 연계표를 「FTA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¹⁴⁾ 기업들은 동 연계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HS 적용 및 원산지판정 과정의 오류와 혼선을 줄이고, 원산지 증명·관리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관세청 제공 HS 연계표

HS 2007 ↔ 2022		HS 2007 ↔ 2022		HS 2007 ↔ 2022	
HS 2022	HS 2007	HS 2022	HS 2012	HS 2022	HS 2017
010121	010110	010121	010121	010121	010121
010129	010190	010129	010129	010129	010129
010130	010110	010130	010130	010130	010130
010130	010190	010190	010190	010190	010190
010190	010190	010221	010221	010221	010221
010221	010210	010229	010229	010229	010229
010229	010290	010231	010231	010231	010231
010231	010210	010239	010239	010239	010239
010239	010290	010290	010290	010290	010290
010290	010210	010310	010310	010310	010310
010290	010290	010391	010391	010391	010391
010310	010310	010392	010392	010392	010392
010391	010391	010410	010410	010410	010410
010392	010392	010420	010420	010420	010420
010410	010410	010511	010511	010511	010511

◎ 자료 출처 : 관세청 FTA 포털

14) 관세청 FTA 포털 → FTA 활용정보 → HS 연계표



5. 마무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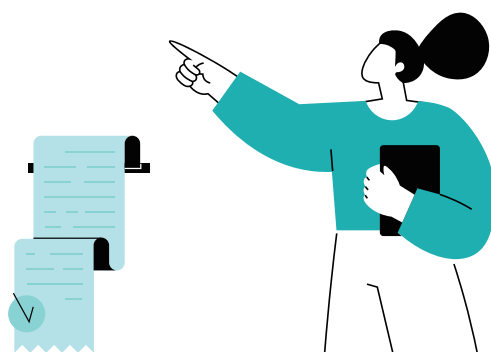
최근 3년간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의 HS 및 PSR 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RCEP(HS 2012→2022), 한-베트남 FTA(HS 2012→2017), 2023년 한-EFTA FTA(HS 2012→2017) 등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최근 개정된 협정들조차 HS 2022 기준으로 전면 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22개 협정 중 HS 2022 기준으로 이행되고 있는 협정은 RCEP이 유일하다.

HS 및 PSR 개정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은 개정 추진 및 착수를 위한 협정당사국과 이해관계 조율이 어렵고, 개정 과정에서도 PSR 관련 실무적 이견이 빈번히 발생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의 HS 및 품목별원산지기준(PSR)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행 HS 및 협정 이행 HS 불일치로 인해 기업의 원산지 판정 및 관세당국의 협정 이행에 많은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 과정에서 기존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까다로운 기준이 완화되고, 신기술 및 무역환경 변화도 반영되므로 협정의 HS 및 PSR 개정은 기업의 FTA 활용 제고 및 관세당국의 협정 이행 효율화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더불어 개정 과정에서 각 산업·품목협회 및 전문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정 후 국내 후속 조치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향후 신속한 협정 이행 HS 및 PSR 개정을 통해 FTA 활용의 예측 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FTA BRIEF



한국원산지정보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SSN 3022-7984